



쓰레기 분리배출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분리배출 시작은 종량제 봉투 속에서 **비닐류**와 **종이류**를 분류해 내는 것부터 출발!



쓰레기 처리 위기상황입니다.

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으로 쓰레기절반줄이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시 과태료 10만원(최고 50만원),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 혼합배출시 과태료 10만원(최고 50만원) 부과

재활용품 배출방법

분리수거함 구비시
품목별 수거함에 배출,
분리수거함 미구비시
투명(반투명) 비닐봉투에 함께 담아 배출

기타 재활용 품목

형광등

형광등, LED, 기타 수은을 함유한 제품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건전지류

건전지
☞ 주요 거점(동주민센터, 편의점 등) 수거함에 배출
☞ 전지를 제품과 분리해 배출

섬유류

의류, 솜 없는 이불
☞ 의류수거함 등에 배출
☞ 물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폐전자제품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TV를 제외한 폐전자제품
☞ 공동주택 내 전용수거함에 배출
☞ 재활용품 배출 시 함께 배출

일반 재활용 품목

종이류

신문지, 전단지, 종이박스, 책자, 노트 등

- ☞ 물기에 젖지 않게 묶어나 박스류에 담아서 배출
※ 사용한 휴지, 1회용 기저귀 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종이팩(음료수, 우유팩 등), 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배출
※ 별도 배출 가능한 곳에는 다른 종이류와 구분해 배출



캔 · 고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경우 분리하여 배출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공구, 철사, 못, 전선, 알루미늄, 스텐 등

-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봉투에 넣어 배출



병류

음료수병, 기타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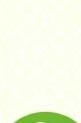
- ☞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소주병, 맥주병은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환불 가능



플라스틱류

페트병, 샴푸 · 세제류, 장난감 등

- ☞ 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페스티로폼

- ☞ 내용물 및 이물질(테이프 등)을 제거 후 배출



비닐류

과자 · 라면봉지, 1회용 비닐봉지 등

- ☞ 내용물을 비우고 날리지 않게 투명봉지에 담아 배출